



검진을 하면서...

# 청 력

삼성코닝 부속의원

김 정 진

30대 초반의 근무경력 10년 사원이 종합병원에서 특수건강진후 청력장해 통보를 받고는 당 건강관리센터에서 다시 측정한 결과 우측은 전 영역에서 정상이나 좌측은 별표와 같이 청력에 장애가 있었다.

	500	1 <sup>K</sup>	2 <sup>K</sup>	3 <sup>K</sup>	4 <sup>K</sup>	5 <sup>K</sup>	6 <sup>K</sup>	8 <sup>K</sup>
우측	05 <sup>db</sup>	05	00	00	10	00	00	00
좌측	05	10	10	55	60	60	50	55

건강체력 측정을 비롯한 각종 건강건강진후 질병상담은 나의 일과이기에 다음은 상담실에서 일이다.

작업중 소음 청력장해자라면 좌우 비슷하겠고 소음아닌 원인을 찾기위하여 성장기에 장기간의 귀질환 유무, 학창시절 “헤드폰” 착용유무, 좌측 귀부분 타박상 유무 및 습관적으로 귀마개 착용 잘못 등을 살폈으나 모두 부인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라고 고집하였다. 눈 같으면 보기싫으면 한쪽만 감으면 되지만 귀는 그런 부속기관이 없어 항상 소리는 개방되어 있는 셈이다. 서로 가까워야 할 사이가 멀어지려는 순간 상담요령이 떠올랐다. 상대방의 잘못을 꼬집지말고 동정하면서 문제의 이해에 힘쓰고 동조하면 심정이 누그러져 상담능률이 올라간다는 것이 생각났던 것이다. 지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 여러 선배의 도움을 얻어 후일 다시 상담하기로 하고 상담일을 정한후 헤어졌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많은 사원들중 유독 그 사원만 아니라고 고집하는데는 묘책이 없어 울화통만 치밀어 몇자 쓰기로 한것이 청력에 관한 소고이다.

좌측 청도에 귀마개마냥 “귀지”가 딱 차있는것도 아니고 고막주위의 형태 등이 정상인데 청신경계에 장애가 있는지 궁금하였다. 청력장해는 다음의 경우 즉, 소음 주파수의 강도가 높을수록,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순간적인 강렬한 폭발음과 귀부분의 타박으로 인한 고막파열 때문에 청소골의 진동전달 장애로 청력장해가 올 수 있다.

일시적 난청은 회화음보다 약간 높은 cycle에서 즉 4,000Hz~6,000Hz에서 가장 많이 생기고 이 현상은 노출후 2시간 후부터 발생하여 하루의 작업이 끝날때까지 20~30dB의 청력손실을 가져온다. 일시적 난청 즉, 청신경 세포의 피로현상 회복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12~24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음작업장에서 작업하다말고 시행한 청력측정은 정확한 수치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소음의 강약, 폭로시간과 격리시간 등 청신경세포의 피로정도에 따라 다를것이다.

산업장과 측정기관은 정밀분석없이 실시인원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정확한 청력측정을 위하여 작년부

터 두가지 운동을 권장하고 있다. 그 하나는 평소에 하는 “하품”이다. 크게 몇번하면 작은 소리도 잘들리는 경우를 가끔 체험한 일이 있을 것이다. 둘째는 한전기공 제주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소음성 난청 예방훈련을 위한 방법으로

1.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손가락으로 양 귀구멍을 막고
2. 입을 다물고 숨을 내쉬어 뺨을 부풀게 한 다음
3. 손가락을 떼면서 입을 “펑”소리와 함께 숨을 내뿜는다.

이상 세가지 동작을 몇번 반복후 청력측정으로 다소 양호한 성적을 얻었다. 이유는 이관 즉 “유스타키오”관이 열림과 동시에 청력기관 자극에 도움이 된 듯하다.

수개월전 입사 신체검사에서 20대 청년이 나무랄데없는 좋은 체구를 갖추었으나 청력장해로 불합격되어 채용할 수 없었다. 여러가지를 살펴보았으나 군복무시 약 2년간의 “사격조교” 근무가 화근인 듯 추정될 뿐이었다. 귀마개 지급도 없이 담배휠터 아니면 풀잎, 솜 등을 귀마개 대신 가끔 사용하였다고 한다. 외청도는 마치 얼굴 모습이 서로 다르듯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귀마개는 일류회사 제품이라도 개체의 외청도 모양에 따라 장단점이 있게 마련인데 탄력성도 없고 크기와 모양을 조정할 수 없는 물체가 귀속 질병은 물론 소음줄이는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대부분의 질병은 발병과 동시 증상이 나타나 대책을 세우게 되어있으나 청력손실만은 짐작은 커녕 자신도 예측이 불가능하여 청력측정후에 후회하게 된다. 계몽과 훈련안된 상태에서 이물질인 귀마개를 귀속에 집어 넣는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다. 그러나 청력보호를 위하여 등한시 할수만은 없어 소음장소에서의 귀마개 미착용은 본인은 물론 반장 아니면 조장까지 “시말서”와 함께 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으나 잠시는 어떠랴 하는 방심이 누적되어 돌이킬 수 없는 청력장해가 노년의 장해까지 이어지면서 커질 수 있다.

상담하면서 청력장해 책임한계를 나름대로 분석하였으나 이는 사원들의 귀마개 착용철저를 위한 계몽으로 또 거짓없는 현실에서 청력손실을 줄이는데 도움을 얻고자 다음과 같이 이용하고 있다. 청력손실의 책임은 우선 사업주에게 있다. 소음장소 근무로 청력만이 아니고 육체 또는 정서적인 면에서 노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청력장해로 건강에 적신호를 예고하고 있다. 사업주는 소음강도를 줄이기 위한 투자에 적극적이라야 하고 소음원 분석 등 안심하고 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더욱더 힘써야 하겠다. 둘째, 청력장해 책임은 “사회”도 함께져야 한다. 날이갈수록 환경공해는 커질뿐 성장기, 군복무, 생활주변의 소음공해가 우리 귀를 그냥 두지 않는다. 셋째, 근로자 자신의 책임이다. 청력 보호를 위하여 규정에 맞는 보호실시를 한치의 어김도 없이 하였는가, 보호장비 사용이 불편한 탓으로 등한시 한일은 없는가 하는 것이 누적되어 청력장해를 낳은 것이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노래방 출입과 헤드폰 착용 등 우리 생활주변의 소음공해는 즐기는 커녕 커져만 가고 있다. 그간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정부는 청력장해 책임을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전가했다. 소음피해 줄이기에 투자를 아끼지않고 시행한 까닭에 오늘의 소음수준에 이르렀다고하나 현 소음수준은 근로자의 청력보호엔 미흡하다. 아직은 정책적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되 엄격히 따지면 근로자 자신도 청력손실의 책임은 있다. 또 다소의 책임이 있어야 청력손실을 줄이는데 보탬이 되리라 믿는다. 보호장비 미착용 책임을 언제까지 사업주에게만 돌릴것인가? 필자는 청력상담시 청력손실 책임한계를 첫째 사업주, 둘째 사회, 셋째 근로자 자신이라고 외치며, 보호장비의 철저한 착용을 당부하고 있다.